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519584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백진욱

변론 종결 2018. 7. 25.(피고 1., 2.에 대하여)

2019. 1. 9.(피고 3.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81,764원 및 그 중 26,427,591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12. 2.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3.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3,735,2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2. 27.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 C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 중 33,735,214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6. 3.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6,581,764원 및 그 중 26,427,591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 중 26,581,764원 및 그 중 26,427,591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에서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11.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이후 32,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8. 1. 10.(이후 2016. 12. 30.까지 연장)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F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7. 1. 12. F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이 2016. 11. 8. 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기업카드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인해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2. 7. F은행에 32,216,3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5,788,80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6,427,591원이고,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49,416원을 지출하였고,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4,757원 발생하였다. 한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B은 2016. 3. 16.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13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 E(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2018. 2. 27.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143,265,0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 C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81,764원(대위변제금 잔액 26,427,591원 + 법적절차비용 149,416원 + 확정손해금 4,75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6,427,5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17. 12. 2.까지 약정 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2007. 1. 11.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각 체결되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 B,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16. 11. 8. 피고 A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16. 12. 7.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2) 갑 6, 9호증, 을다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그 가액은 590,000,000원인 사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인 2006. 3. 20.자 근저당권, ②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H인 2007. 2. 26.자 근저당권, ③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인 2011. 11. 11.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① 근저당권의 경우 202,939,000원 [152,940,000원(2016. 3. 28. 기준) 및 49,999,000원(2016. 4. 13. 기준)], ② 근저당권의 경우 225,000,000원[151,000,000원(2017. 3. 13. 기준) 및 74,000,000원(2017. 3. 6. 기준)], ③ 근저당권의 경우 25,880,520원(2018. 2. 27. 기준)인 사실, 라) 피고 B은 피고에 대하여 3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36,180,480원(= 590,000,000원 - 202,939,000원 - 225,000,000원 - 25,880,520원)에 지나지 않는데, 피고에 대한 채무가 3억 2,000만 원에 달하므로, 결국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B은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11년경 I 주식회사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료를 공급받아왔는데, 2014. 1.경 I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I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을 자신을 통하여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4. 2. 19.부터 2016. 3. 2.까지 I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이를 I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여 2016. 3. 2. 기준 피고 C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가 346,385,149원이 남아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 B은 2016. 3.경 피고 B이 횡령한 물품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피고 C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진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을다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취소의 범위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액은 26,581,764원 및 그 중 26,427,591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12. 2.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9.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33,572,404원[= 26,581,764원 + 2,613,797원{= 26,427,591원 × 361/365 ×

10%} + 4,376,843원{= 26,427,591원 × (1 + 38/365) × 15%}]이다.

한편 갑 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금 162,810원을 교부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C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받으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향후 있을 수 있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 33,572,404원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교부청구액 162,810원의 합계액인 33,735,21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가 아직 배당액 143,265,020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2018. 2. 27.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 C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 중 앞서 인정한 33,735,214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위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영

별지